

제406회 국회
(임시회)여성가족위원회회의록
(법안심사소위원회)

제 1 호

국 회 사 무 처

일 시 2023년5월16일(화)

장 소 여성가족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최연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297)
2.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은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009)
3. 청소년활동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852)
4.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박대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852)
5.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장제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529)
6.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송재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957)
7.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105)
8.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정청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317)
9.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홍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449)
10.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달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028)
11.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263)
12.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강선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292)
13.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은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281)
14.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윤후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846)

상정된 안건

4.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박대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852) 2
5.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장제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529) 2
6.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송재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957) 2
7.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105) 2
8.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정청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317) 2
9.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홍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449) 2
10.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달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028) 2
11.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263) 2
12.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강선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292) 2
13.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은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281) 2
14.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윤후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846) 2

(09시39분 개의)

○소위원장 정경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6회 국회(임시회) 제1차
여성가족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앞서 안내말씀 드립니다.

먼저 우리 소위원회 위원님 사·보임이 있었습니다.
지난 4월 25일자로 우리 소위원회에서 활동하시던 전주혜 위원님께서 사임하시고 김미애
위원님께서 보임하셨습니다.

김미애 위원님 환영합니다.

간단하게 인사말씀 해 주십시오.

○**김미애 위원** 진심으로 환영합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조은희 위원** 인사드립니다.

○**김미애 위원** 저도 잠시 떠났다가 다시 돌아왔는데 참 마음이 편안합니다.

그리고 오늘도 법안소위 심사자료를 보니까 제가 변호사 시절에 늘 봐 왔던 일들이어서 좀 더 진정성을 가지고 남은 임기 동안 임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만나 뵙게 되어서 무척 반갑습니다.

○**소위원장 정경희** 인사말씀 감사합니다. 많은 활동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을 상정하여 각 안전별로 수석전문위원의 설명과 정부 측 의견을 들은 후 위원님들의 질의와 답변을 거쳐 의결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보다 면밀한 논의가 필요한 사항이 발견되면 해당 부분은 오늘 심사를 일단 유보하고 추후에 보다 심도 있게 심사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법안심사를 위해 이기순 여성가족부차관께서 출석하셨습니다.

배석하고 계신 분이 답변을 하는 경우에는 원활한 회의 진행과 회의록 작성을 위하여 소속·직위·성명을 먼저 밝힌 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소위는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 연번 제4항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4.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박대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852)

5.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장제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529)

6.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송재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957)

7.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105)

8.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정청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317)

9.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홍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449)

10.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달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028)

11.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263)

12.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강선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292)

13.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은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281)

14.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윤후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846)

(09시41분)

○**소위원장 정경희** 의사일정 제4항부터 제14항까지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11건의 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그러면 수석전문위원께서 주요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송주아**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법안심사소위원회 심사자료 43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43쪽,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11건에 대해서 보시면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쉼터 입소 청소년에 대한 쉼터 입소동의권을 부여하는 내용과 청소년쉼터의 자립 지원 조치에 관한 내용 등 다양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조문별 검토에서 보고드리겠습니다.

46쪽, 가정 밖 청소년 지원 근거와 관련된 조문입니다.

현행법 16조에 보면 가정 밖 청소년에 대한 지원 규정으로서 1항에서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가정 밖 청소년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교육·홍보·연구·조사 등 각종 정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2항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가정 밖 청소년의 가정·사회 복귀를 돕기 위한 상담, 보호, 자립 지원, 사후관리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16조 1항을 수정하여 가정 밖 청소년의 예방뿐 아니라 지원을 위한 교육·홍보·연구·조사 등 각종 정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에 더해 김홍걸 의원안의 경우에는 청소년복지시설에 대한 교육·홍보 등을 실시하는 것을 명시하고, 송재호 의원안은 청소년쉼터 및 청소년자립지원관 확충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하고 가정 밖 청소년의 사생활 보호를 위한 개인별 독립공간을 확보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윤후덕 의원안의 경우 가정 밖 청소년의 자립을 위한 주거시설 확충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행법 제16조 1항에 가정 밖 청소년 발생 예방과 지원 내용을 함께 규정하는 개정안의 내용에 대해서는 적절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추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하여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먼저 청소년복지시설 교육·홍보와 관련해서는 현재도 이 부분에 대한 연구를 하고 있고 그런 측면에서 이 부분을 분리하여 규정할 실익은 적은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청소년쉼터·청소년자립지원관 확충과 관련해서는 현행법 32조에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고 이미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조문을 별도로 신설하기보다는 예산 확대를 통해서 청소년쉼터와 자립지원관 확충이 가능해 보입니다.

다음, 개인별 독립공간 확보 조문입니다. 이 부분은 다수가 생활하는 시설의 공간적, 재정적 상황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고 또 유사 보호시설과의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점에서 신중한 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 가정 밖 청소년의 주거시설 확충과 관련해서는 현재 공공임대주택사업을 통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행 법령과 제도 내에서 개선·보완하는 방안이 적절해 보입니다.

이러한 검토의견을 드리고, 48쪽에서 수정의견으로 1항에 가정 밖 청소년의 발생 예방 및 지원을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하도록 조문을 정리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정경희 그러면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부차관 이기순 16조 1항에서 가정 밖 청소년 발생 예방 및 지원을 함께 규정하는 개정안 내용은 수석전문위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동일한 의견으로 적절하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그 후의 청소년복지시설 교육·홍보에 대한 조항은 수석전문위원님과 동일하게 신중 검토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청소년복지시설에 대한 교육·홍보 등이 수행되어 있고 현행 조문에서도 가정 밖 청소년을 위한 교육·홍보·연구·조사

등을 시행하게 되어 있어서 따로 규정할 실익이 없다고 보여집니다.

또 청소년쉼터·자립지원관 확충에 대한 의견도 수석전문위원과 동일하게 신중 검토의견입니다. 왜냐하면 현행법 31조 및 32조에 따라서 청소년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도록 하고 있어서 별도로 확충 시책을 따로 둘 실익은 없다고 보여지고.

또 개인별 독립공간을 마련하는 것도 수석전문위원과 동일하게 신중 검토의견입니다. 왜냐하면 쉼터 운영에 과도한 부담이 될 수 있고 청소년 관계 형성에도 부정적 영향의 우려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정 밖 청소년 주거시설 확충 부분도 수석전문위원과 동일하게 신중 검토의견입니다. 따로 주거 지원에 대한 부분들을 별도 규정으로 마련하기보다는 청소년복지시설 등에 대한 구체적인 자립 지원 근거 규정에 주거 지원을 포함하는 방식으로 대체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정경희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애 위원 지금 수정의견을 말씀하셨는데 저도 그 부분에 공감을 합니다. 특히 예방뿐만 아니라 지원을 함께 규정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보여지고요. 나머지는 이미 현행 규정으로도 충분히 이 취지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결론은 예산 문제인데 예산을 확보해서 취지가 잘 구현되도록 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수정의견에 동의하는 바입니다.

○소위원장 정경희 여가위의 의견하고 동일하기 때문에……

○김미애 위원 예, 같은 의견입니다.

○소위원장 정경희 지금 다른 위원님들이 안 계시는 상황이어서 일단 가정 밖 청소년 지원 근거 마련에 관한 내용은 정리하고 다음 항목으로 넘어가야겠군요.

○김미애 위원 그러니까 16조 1항에 지원만 넣는 것으로 하고 나머지는 전부……

○소위원장 정경희 예, 지금 우리가 논의한 부분이 가정 밖 청소년 지원 근거 마련인데요. 가정 밖 청소년 발생의 예방과 지원하는 데 대해서는 지원 내용을 새로 규정하는 데 별 이의가 없기 때문에 예방과 지원 항목을 넣기로 했어요. 그다음에 다른 세 가지 항목, 청소년복지시설 교육·홍보, 청소년쉼터·청소년자립지원관 확충,

개인별 독립공간 확보, 가정 밖 청소년 주거시설 확충의 문제는 여러 가지 재정적 상황을 고려해서 채택하지 않는 것으로……

○김미애 위원 위원장님, 하나만 덧붙이겠습니다.

○소위원장 정경희 예.

○김미애 위원 다만 법에서 세분화해서 규정하지 않더라도 여가부가 진정성을 가지고 발의하신 내용이 현장에서 구현될 수 있도록 좀 더 애써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여성가족부차관 이기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정경희 청소년 발생 예방 및 지원한다는 수정의견대로 반영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조문입니다.

청소년쉼터 운영 가이드라인 마련에 관한 논의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의견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 송주아 51쪽 보고드리겠습니다.

청소년쉼터 운영 가이드라인과 관련된 조문입니다.

송재호 의원안에서 제32조의2를 신설하고 있습니다. 송재호 의원안은 청소년쉼터 이용 청소년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청소년의 인권과 권리, 사생활 보호, 성교육을 포함한 쉼터 운영 가이드라인을 제작하여 보급하려는 내용입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안은 청소년쉼터에서 청소년의 인권과 사생활 등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고자 하는 취지입니다. 다만 여성가족부는 현재도 청소년 사업안내 및 청소년쉼터 운영 매뉴얼에서 청소년 인권 보호를 위한 지침을 마련하여 쉼터 운영에 인권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고 청소년 인권 보호를 위한 자체점검표를 통해 시설 운영에 청소년의 의견을 반영하고 청소년의 사생활이 보호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있음을 고려해서 신중하게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조문은 56쪽에 조문대비표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정경희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부차관 이기순 수석 의견과 동일하게 이 조항에 대해서는 저희도 신중 검토의견입니다.

이미 저희 매뉴얼에도 표현이 되어 있고 사실 또 이런 식의 시설 운영 가이드라인이라든가 운영 기준 내용들은 하위법령에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법에서 따로 뒤야 될 실익은 별로 없

어 보입니다.

○소위원장 정경희 그러면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애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개정안이 청소년복지 지원법에 32조의2를 신설하려는 것이지요? 맞습니까?

○여성가족부차관 이기순 예.

○김미애 위원 제목이 그렇게 돼 있어서……

그런데 지금 32조의2가 있는데 무슨 말인지 잘 이해를 못 하겠네요.

청소년복지 지원법 32조의2를 신설하려는 것이 맞아요? 내가 법을 열어 놓고 보는데, 32조의2가 있는데 청소년쉼터…… 32조의3을 신설하려는 건가?

그러니까 개정안 자체에 오기가 있든지 그런 잘못이 있었네요. 그렇지요? 32조의2는 있는데……

○소위원장 정경희 약간 이게 잘못돼 있나요, 32조의2를 신설한다는 게? 기존에 32조의2가 있는데……

○김미애 위원 저는 볼 때 항상 현행법을 다 보거든요. 그런데 이미 32조의2에 ‘가정 밖 청소년의 청소년쉼터 계속 이용’이라는 규정이 있는데, 송재호 의원안은 ‘청소년쉼터 운영 가이드라인의 마련’ 이런 제목으로 신설한다고 했는데 이게 32조의3을 신설하겠다는 취지로 보입니다. 그렇겠지요?

○소위원장 정경희 발의된 법안 자체에 오류가 있는 것으로……

○김미애 위원 맞아요?

○수석전문위원 송주아 위원님, 제가 보고드릴까요?

○김미애 위원 예.

○수석전문위원 송주아 송재호 의원님 안은 32조의2를 신설하고 현행 있는 32조의2는 32조의3으로 바꾸려고 하는 내용입니다.

○김미애 위원 그렇습니까?

○수석전문위원 송주아 예.

○소위원장 정경희 32조의2는 이미 다른 게 있는 것이지요.

○김미애 위원 그러면 다음부터는 수석전문위원께서 말씀하실 때 거기에 대한 설명까지 해 주세요.

○수석전문위원 송주아 예, 보고드리겠습니다.

○김미애 위원 이해가 되지 않거든요.

○수석전문위원 송주아 예, 저희가 간략하게 하

다 보니까 생략했는데 다음에는 다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애 위원** 제가 볼 때 가이드라인은 마련을 해야 될 것으로 보이는데 의견을 보니까 이미 사업안내나 운영 매뉴얼에서 정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수석전문위원 송주아** 예.

○**김미애 위원** 그런데 운영 매뉴얼에서 정하고 있는 거랑 법에 넣는 것은 차원이 다른 문제로 보이는데?

○**소위원장 정경희** 그러니까 우리 자료집의 52쪽부터 53·54·55쪽에 있는 게 매뉴얼이라는 것이지요? 현행 매뉴얼입니까?

○**수석전문위원 송주아** 예, 그렇습니다.

말씀드린 부분은 현재도 현행법 내에서 하고 있고 지금 이런 부분은 보통 일반적으로 하위법령에 근거하여 하고 있기 때문에 법률에 굳이 규정하지 않더라도 할 수 있다는 부분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김미애 위원** 그러니까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데 오히려 지장을 줄 수 있어서, 그런 취지도 포함되는 것이겠지요?

이것은 오늘 다른 위원님들이 안 계셔서 그런데 계속 심사를 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소위원장 정경희** 왜 계속 심사를 한다는 말씀이시지요?

○**김미애 위원** 제가 볼 때는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필요도 있어 보이는데 또 한편으로는 법으로 해 놓으면 오히려 탄력적으로 변경하기 여의치 않은 측면이 있어서…… 여가부 의견도 타당한 것은 같지만 그러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더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 만들 때 좀 더 가이드라인을 입법으로 제대로 더 충실히 해 놓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저 혼자 의견으로 이것을 정하기에는 다소 부담스러운 측면이 있습니다.

○**소위원장 정경희** 청소년쉼터 운영 가이드라인 마련하는 이 조문에 관해서는 계속 심사하자?

○**김미애 위원** 예, 제 의견은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소위원장 정경희**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계속 심사하는 것으로 하고, 다음 조문에 관한 심사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가정폭력 어려운 청소년의 쉼터 입소 시 보호자에 대한 연락의무 면제 등에 관한

조문 심사로 넘어가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 주요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송주아** 57쪽입니다. 가정폭력 어려운 청소년의 쉼터 입소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현재 청소년이 쉼터에 입소할 때 보호자에게 연락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고 그 대안으로 해결책을 내고자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먼저 말씀드리면, 박대출 의원안과 정청래 의원의 경우 쉼터 이용을 희망하는 청소년이 아동학대, 가정 내 성폭력, 친족에 의한 성폭력 등의 피해자인 경우 청소년 본인에게 쉼터 입소동의권을 부여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송재호 의원안, 조은희 의원안, 윤후덕 의원안의 경우 가정 밖 청소년이 쉼터에 입소할 때 보호자에 대한 연락의무를 법률에 명시하고 가정폭력, 친족에 의한 성폭력 등 가정으로의 복귀가 어려운 청소년인 경우에는 보호자에 대한 연락의무를 면제하는 내용입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재는 여성가족부 지침에 따라 보호자에게 연락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정폭력 및 학대 등의 사유로 쉼터에 입소한 경우에는 보호자에게 연락하지 않고 경찰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신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쉼터 운영위원회에서 사전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거나 사례별 판정 기준을 마련하여 보호자에게 연락하지 않도록 하고 있어서 쉼터별 일관성이 부족하다거나 아니면 법적 구속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에 개정안은 가정폭력, 친족에 의한 성폭력, 그 밖에 가정으로 복귀하여 생활하기 어려운 사유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청소년이 쉼터에 입소하는 경우에 보호자에게 연락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법률에 명시하는 것으로 개정안은 의미 있다고 보입니다.

다만 개정안에 대해서 다음의 측면을 고려해서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먼저 쉼터 입소동의권 부여와 관련해서는 개정안과 같이 규정한다고 하더라도 보호자에 대한 고지의무가 면제된다고 해석하기는 좀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민법상 친권에 따른 미성년자의 양육권, 거소지정권 등이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 보호자에 대한 연락의무 면제와 관련해서는

민법상 친권과의 충돌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보호자에 대한 연락의무를 면제하는 불가피한 사유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고 해당 내용을 임의규정으로 하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성가족부와 이견이 있는데요, 59쪽 보고드리겠습니다.

관계기관 의견입니다.

여성가족부는 수정 수용 입장을 제시하면서 쉼터의 입소동의권 부여는 검토보고와 같은 측면에서 문제 제기를 하고 보호자에 대한 연락의무 면제 방식을 추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호자에 대한 연락의무를 면제하면서 그 연락의무 면제되는 사유를 폭넓게 규정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당구장 표시에서 보시면 연락의무 면제 사유를 정리했는데 밑줄 친 부분이 여성가족부가 추가해야 된다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연락의무 면제 사유로 가정폭력, 친족에 의한 성폭력, 그 밖에 가정으로 복귀하여 생활하기 어려운 사유가 원인이 되어 입소하거나 보호자와 연락이 되지 않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해야 된다는 입장입니다. 그 이유는 예외 사유 증명 확인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과 보호자와 연락이 되지 않거나 불가능한 경우도 있는데 이때 쉼터 입소를 허용해야 한다는 측면입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하위법령에 위임할 수 있다는 입장이고요.

지금 여가부가 이야기하는 예외 사유 증명 확인이 어렵다는 현실적인 부분을 이해합니다만 개정안은 원칙으로 보호자에 대한 연락의무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외를 규정하고 있는데, 원칙과 예외를 하면 예외는 되게 분명해야 됩니다. 분명히 제한적으로 규정해야 되는데 지금 이렇게 되면 너무 폭넓다는 문제가 있고요. 그리고 더군다나 보호자에게 연락을 하도록 하면서 ‘연락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연락하지 않을 수 있다’고 한다면 보호자에 대한 연락의무 자체를 형해화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가부의 입장을 이해합니다만 이대로 조문화하기에는 문제가 있다고 보여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60쪽 수정의견을 하면서 연락의무 면제 사유를 임의규정으로 하는 것 등으로 정리를 했습니다만 연락의무 면제 사유를 어떻게 해야 할지 정하지 못해서 이 부분은 논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58쪽 중간 부분에 저희가 생략한 부분을 다시 말씀드리면요, 이 부분은 좀 다른 내용인데 현행 법령은 가정 밖 청소년 본인 의사에 반한 쉼터 퇴소 불가 사유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금 가정폭력, 친족 성폭력, 그 밖에 가정으로 복귀하기 어려운 사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인 경우 본인 의사에 반한 쉼터 퇴소가 불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정안은 이 사유가 쉼터 입소 시 보호자 연락의무 면제 사유와 동일하다는 전제하에 이를 그대로 인용하고 있습니다. ‘1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데요. 쉼터 퇴소 불가 사유와 보호자에 대한 연락의무 면제 사유는 사실 달라질 수 있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개정안과 같이 쉼터 입소 시 보호자에 대한 연락의무 면제 사유를 그대로 인용하지 않고 현행과 같이 별도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수정의견으로 구체적으로 현행과 같이 나열하는 방식으로 정리하여 보았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위원장 정경희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부차관 이기순 아까 수석께서 저희 의견을 얘기하셨는데, 일단 입소동의권을 부여하는 이 부분은 부모 연락에 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되 연락의무를 면제할 수 있는 예외적인 사유를 하위법령에 규정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입장을 갖고 있고요.

보호자에 대한 연락의무 면제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준에 얘기했던 가정폭력, 친족에 의한 성폭력, 그 밖에 가정으로 복귀하여 생활하기 어려운 사유가 되어서 입소하거나…… 수석전문위원하고 다른 게 ‘보호자와 연락이 되지 않는 등’은 저희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냥 넣은 것은 아니고 보호자와 연락이 되지 않는 등 대통령령으로 구체화시킬 수 있는 것들을 넣었습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를 넣었고.

사실 쉼터 같은 경우에 보호자와 연락이 안 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연락의무 면제 조항에 가정폭력, 성폭력만 넣었을 경우에는 상당히 현실적으로 이행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연락이 안 되는 경우도 저희는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소위원장 정경희 지금 수석전문위원의 입장과

정부 측 의견이 굉장히 팽팽히 맞서고 있는 것 같은데요.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애 위원** 이것은 상당히 어려운 문제이고 정말 신중히 접근해야 됩니다. 저는 수석전문위원 의견에 동의하는데요, 그 이유는 이런 경우입니다. 청소년은 19세 미만인데 이런저런 사유로 청소년쉼터에 입소했는데, 나쁜 케이스가 어떤 것이냐 하면 보통은 여러 어려움으로 입소를 했기 때문에 불안정한 경우가 많아서 심리치료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로 더 집중적으로 돌봐 줘야 되는데 쉼터 상황이 아직 그렇지 못한 곳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면 거기에서 제대로 적응하지 못하는 경우가 현실적으로 더 많거든요. 그러면 계속 말썽을 일으키는데……

지금 여가부 의견대로 보호자와 연락이 되지 않는 등 이런 사유가 많지요. 그렇다고 해서 퇴소시켜 버리면 이 아이는, 결국은 귀찮은 아이는 어디에도 갈 데가 없어지는 문제가 생깁니다. 오히려 그런 아이들을 더 잘 돌봐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 본인이 원한다고 해서 퇴소를 그냥 쉽게 시켜 버리면 어떻게 될까…… 저는 오히려 그런 청소년을 국가와 지자체가 더 잘 돌봐야 되는데, 그게 국가의 기본적 의무이기도 하고. 그러면 그런 경우를 어떻게 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한 대안은 뭔지, 그것 설명 좀 해 주세요.

○**여성가족부차관 이기순** 위원님, 현행법에는 퇴소를 시키지 않을 사유를 마련하고 있어요. 입소할 때 동의를 받아야 된다는 조항은 현재는 없습니다. 사실 동의받는 부분들은 실질적으로 하고는 있지만 법에는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퇴소할 경우에 이런 아이들…… 가정폭력, 성폭력, 친족에 의한 성폭력 같은 경우에는 퇴소시키면 안 된다는 조항만 두고 있는 것이고 실제 입소를 할 경우에 동의권 여부가 법에는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지금 의원님들이 그것을 갖고 들어온 거거든요. 입소할 때도 동의권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입소할 때 ‘보호자에 대한 동의’라는 표현을 쓰지 말고 ‘연락을 해야 된다’라는 의무를 쓴 거예요. 연락의무를 두는데, 저희는 연락의무를 두는 것은 동의를 하지만 면제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퇴소와 똑같이, 퇴소에 제한을 둔 것처럼 연락의무도 가정폭력, 성폭력, 친족에 의한 성폭력 같은 경우는 연락을 면제할 수 있다는 부분입니다.

○**김미애 위원** 그 부분은 동의해요, 거기까지는.

○**여성가족부차관 이기순** 그래서 지금 현재도 보호자와 연락이 되지 않을 경우에…… 그러면 연락을 해야 된다고 하면 보호자와 연락이 안 되는 경우에는 애들을 입소를 못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럴 경우 어떻게 할 거냐 해서 현재는 입소동의권 여부가 없기 때문에 대통령령에 위임을 하자. 연락의무가 명시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그럴 경우에는 운영위원회를 열어서 문제 있는 사항을 심의를 하지 마음대로 정하지는 않고 있어요. 다만 현재 실제로 이렇게 하고 있는 데도 불구하고 명시적으로 법에 둘 거냐 말 거냐를, 지금 현행화하고 있는 부분들을 올린 겁니다.

그래서 지금 수석전문위원하고 저희하고 갈리는 경우는 연락의무 배제 사유 중의 하나가 보호자랑 연락이 안 닿는 부분을 어떻게 할 거냐라는 부분을 우리는 구체적으로 넣자는 것이고 수석전문위원은 그것을 동의하지 않고 계신 거라서 그 부분이 차이가 있는 부분입니다.

○**김미애 위원** 그게 맞아요?

○**여성가족부차관 이기순** 예, 예.

이것은 동의 여부하고 다르고 연락의무……

○**김미애 위원** 그것은 제가 이해를 잘못된 것 같습니다.

○**여성가족부차관 이기순** 예, 퇴소를 시키고 이러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만약에 의견이 일치 안 되고, 사실 김미애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것처럼 신상에 대한 것이고 상당히 중요하고 또 현장에서는 반반이예요. 이렇게 좀 하자는 의견도 있고 아니라는 의견도 있어서 만약에 계속 논의가 필요하시다면 저희는 이것도 그냥 계속 심사로 놔둬도…… 현행법으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다 하더라도, 현재는 하위법령 또는 실제 지침이나 이런 것으로 운영을 하고 있어서 큰 문제는 없습니다.

○**소위원장 정경희** 문제는 없나?

○**여성가족부차관 이기순** 예.

○**소위원장 정경희** 그러니까 지금 이 조문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분명히 해야 될 게 현재는 입소동의권이라는 것 자체가 없다는 말씀이신 것이지요?

○**여성가족부차관 이기순** 법에는 명시화가 안 되어 있습니다.

○**소위원장 정경희** 그런데 57쪽에 보면 박대출 의원하고 정청래 의원안은 쉼터 입소동의권을 해당

청소년에게 부여한다라는 그런 것을 발의하셨잖아요?

○여성가족부차관 이기순 예.

○소위원장 정경희 그러니까 입소동의권이라는 것 자체가 없는데 특별한 경우, 청소년이 아동학대를 당했거나 가정 내 성폭력, 친족에 의한 성폭력 등의 피해자인 경우에 쉼터 입소동의권을 부여한다라는 법안을 내셨는데 이것은 사실 현실하고는 맞지 않다 이런 말씀이신 것이지요?

○여성가족부차관 이기순 지금 현재……

○소위원장 정경희 그렇게 이해해야 되는 것이지요? 현재 입소동의권이라는 게 없는데 입소동의권을 청소년에게 부여한다라는 것 자체가 오히려 실제로 청소년들에게는 도움이 안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현장에서? 저는 그렇게 이해했는데.

○수석전문위원 송주아 제가 좀 말씀드리면, 입소동의권을 두자는 것은 청소년 본인이 원하는 경우에 청소년쉼터에 입소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고, 보호자에게 연락을 해서……

○소위원장 정경희 필요 없이 한다라는 말씀……

○수석전문위원 송주아 연락을 하지 않도록 하자는 취지로……

○소위원장 정경희 아니, 그러니까 그 취지는 이해를 하는데 제 말씀은 뭐냐 하면 이게 법적으로, 법리에 맞는가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동의권이라는 것은, 동의는 제3자가 해 주는 것이지요. 본인이 동의를 한다는 것은 법리적으로 맞지가 않다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본인이 입소하려면 원래 보호자로부터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오히려 이런 경우에는 보호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입소해야 된다 이 말이지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그런 방안을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런 취지에서 법안을 내시긴 하셨는데 법안 낸 것이 입소동의권이라는 것을 오히려 명문화함으로써 입소동의권 자체를 새로 만들어야 되는, 그러니까 입소동의권이 법적으로 명문화되면 오히려 입소 자체가 어려워질 수가 있다라는 얘기 아닙니까?

○수석전문위원 송주아 입소동의권에 대해서는 입소동의권을 법률에……

○소위원장 정경희 그리고 동의권을 본인이 가진다는 것도 법리적으로 말이 안 돼요.

○수석전문위원 송주아 지금 그런 부분도 있고요. 입소동의권을 신설한다고 하더라도 부모에게 연락을, 보호자에게 연락은 또 계속 현행처럼 해

야 된다는 측면에서 문제 제기가 있습니다.

○소위원장 정경희 예, 그렇지요.

그러니까 지금 이 경우에는 성폭력을 당했거나 가정 내 성폭력이거나 친족에 의한 성폭력인 경우에는 오히려 연락을 하면 더 안 되는 상황인 것이지요.

○김미애 위원 제가 하나 질의할게요.

그런데 어차피 본인의 의사에 반해서 입소하기는 어려운 현실적인 문제가 있을 것도 같은데 그러나 그것도 청소년 연령에 따라서, 사실은 아이의 의사능력 수준이 좀 다를 수도 있고 어차피 민법상 행위능력이 없기 때문에 친권이 있는 건데, 또 예외적인 이런 상황들에 대해서는 반드시 입소를 시켜야 되는 상황이고, 아이가 그 가정 안에서 머무르면 오히려 아이의 인권이 침해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쉼터에 가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입소동의권이라고 명문화하는 것이 맞는지, 만약에 입소동의 그 의사 자체의 의미를 제대로 잘 모르는 아이들은 또 어떻게 할 것인지……

○여성가족부차관 이기순 위원님, 그래서 저희는…… 의원님 안이 갈라져 있는데 박대출·정청래 의원이 얘기한 것은 쉼터 입소동의권을 부여하자는 거예요. 57페이지에 그게 정리가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저희는 반대합니다.

따로 명문화시키자는 것은, 입소동의권을 부여하는 것은 지금 어쨌든 민법에 친권에 대한 규정이 있기 때문에 부딪힐 수도 있고, 아까 수석전문위원이 얘기한 것처럼 동의를 해 준다 하더라도 고지를 해 줘야 되는 의무는 살아 있는 것이라 입소동의권을 두자는 것은 반대하고.

송재호·조은희·윤후덕 의원은 입소동의권이 아니라 보호자에 대한 연락의무 면제 사유를 넣은 거거든요. 연락의무를 면제할 수 있는, 부모 연락에 대한 근거 규정을 넣은 거예요, 동의가 아니라.

그러니까 연락의무 근거 규정을 두는 것은 좋다는 겁니다. 그런데 연락의무 근거를 두되 연락을 안 할 수 있는 예외규정에 대해서 저희와 수석전문위원하고 차이가 있는 거예요. 예외규정에 가정폭력, 성폭력, 친족에 의한 성폭력은 연락 안 해도 좋다는 것에 동의하지만 저희는 추가적으로, 보호자랑 연락이 안 될 수 있는 사유가 사실은 많기 때문에 이 부분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한해서 두자라고 요건을 하나 더 단 건데, 그 의견이 차이가 있는 겁니다. 입소동의권을

부여하자는 의견이 아닙니다.

○소위원장 정경희 정리가 다 됐습니다. 입소동의권이라는 것은 제가 아까 보충해서 질의한 것처럼 그것 자체가 법리적으로 말이 안 된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본인이 자기에 관한 것을 동의한다라는 것 자체가 법리적으로 맞지 않아요. 동의라는 것은 타인이, 제3자가 해 주는 게 동의이지 본인이 본인 문제를 동의한다는 것은 법리적으로 맞지 않고.

지금 우리는 입소동의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보호자에 대한 연락의무를 면제하는 조항을 넣었는데 여가위의 의견과 여가부의 의견이 다르다 이 말이지요.

여가부에서는 1, 2, 3 사유를 넣고 거기에 원인이 되어 입소하거나 플러스 뭐가 있느냐 하면 보호자와 연락이 안 되는 경우를 명문화하자는 건데, 여가위 쪽에서는 뭘 걱정하시냐면 그럴 경우에, 법령을 그렇게 만들면 보호자와 연락하려는 의지 자체가 약화될 수 있고 법적으로 그 부분이, 친권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가 될 수 있다라고 해서 그 구절을 빼자는 거지요. 그 점이 차이점이에요.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조정하면 좋을까요?

김미애 위원님, 그것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미애 위원 현재는 이 규정이 없잖아요. 그렇지요?

○여성가족부차관 이기순 예.

○김미애 위원 현재는 어떻게 운용되고 있어요?

○여성가족부차관 이기순 현재는 32조의2에 따라 본인의 의사에 반해서 퇴소시키면 안 된다는 조항이 있어요. 그리고 입소할 경우에 24시간 이내에 실제로 부모한테 연락을 합니다.

○김미애 위원 이 규정이 없는데?

○여성가족부차관 이기순 없어도 연락을 하는데 연락이 안 되는 경우 계속 둘 거냐 나가게 할 거냐 했을 때 이런 식으로 운영위원회를 열어 가지고 가정폭력·성폭력 이런 경우 또는 보호자가 장기로 외국에 가 있거나 또는 어디 수감이 되어 있거나 그럴 경우에는 둘 수 있도록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김미애 위원 그런데 여가부 입장에서 입소동의 연락을 면제하는 규정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여성가족부차관 이기순 있으면 좋은데 예외적으로, 논란거리를 줄이기 위해서 명시화시키는 것은 필요하다고 보지만 만약에 보호자한테 연락

을 못 하는 경우를 여러 가지 법 논리상 제하고 간다면 현행법보다도 운용하는 데 상당히 더 어려움이 있어서 저희는 차라리 수정을 안 하는 게 낫겠다라는 의견입니다.

○김미애 위원 그럴 수도 있겠네요.

○소위원장 정경희 아니, 그러니까 제가 인지하기에는 그런 겁니다. 여가위 수석께서는 아무래도 법리적인 측면을 강조하시는 것이고 여성가족부에서는 법을 실행하시는 측면이니까 현실적인 것을 고려하시는 측면인데요. 글썄, 청소년들에게 어느 쪽이 정말 실질적인…… 청소년센터 같은 데 입소해서 퇴소되지도 않고 현상을 유지할 수 있는, 현실적으로 청소년들에게 도움이 되는 법안을 만들어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지금 쟁점이 대통령령으로 사유를 구체적으로 정하는 것 아니에요? 대통령령으로 사유를 얼마나 잘 정해서 운용을 하느냐 하는 운용의 묘에 달려 있는 것 같은데 수석께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라고 괄호 안에 집어넣은 그것, 운용의 묘를 여가부 자체에 맡기는 데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수석전문위원 송주아 지금 입법하는 데 있어서 일단 원칙과 예외를 하는데 연락을 하도록 원칙을 정하면서 연락이 안 되는 경우는 안 해도 된다고 한다면 이런 조항이 굳이 필요할까 하는 부분이 있어서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면 차라리 현행처럼 지침을 통해 해결하는 방안이 오히려 더 현실적이라고 보입니다.

○소위원장 정경희 그러면 이렇게 하면 어떻습니까? 58쪽에 현행, 개정안, 수정의견 이렇게 있잖아요. 거기서 면제 사유를 적용한다라고 하고 그 안에 ‘①가정폭력, ②친족에 의한 성폭력, ③그 밖에 가정으로 복귀하여 생활하기 어려운 사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하자는 게 여가위의 입장이고 그다음에 ‘어려운 사유가 원인이 되어 입소하거나 보호자와 연락이 되지 않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 이게 여가부의 입장 아닙니까. 그러면 이 구절을, 그러니까 ‘③그 밖에 가정으로 복귀하여 생활하기 어려운 사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법안을 해 놓고 그리고 ‘등’에서……

○김미애 위원 그러면 너무 넓어져요, 예외적인 사유가. 전부 다……

○소위원장 정경희 그런데 어차피 여가부에서는 보호자와 아예 연락이 되지 않는 것도 법안에 넣자는

것 아니에요. 그것은 아니더라도 일단 ‘복귀하여 생활하기 어려운 사유 등’으로 해서, ‘등’을 집어 넣고 보호자와 연락이 안 되는 것을 대통령령에서 집어넣든가 해서……

○**김미애 위원** 위원장님, 제가 좀 말씀드릴게요.

그렇게 하면 현장에서 조금 위험한 경우가 어떤 경우가 있냐면 이혼소송 중일 때 아이들을 가지고 싸울 경우가 많거든요. 어디 있다고 알려주지도 않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그럴 때 악용될 소지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수석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예외적인 경우가 너무 많으면 오히려 개정을 안 하는 게 낫다 싶습니다.

○**여성가족부차관 이기순** 저희 부도 그렇게…… 연락의무 면제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냈던 부분들이 문제 있다고 생각을 하신다면 그냥 현행대로 놔두시고 그리고 나서 현장 의견을 조금 더 듣는 시간을 갖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김미애 위원** 제가 어떤 우려가 있어서 말씀드렸냐면, 여가부가 이것을 운용할 때 왜 연락 안 해 줬냐고 부모가 항의하는 그런 일들은 없었는지, 이런 경우는 현장에서 없었어요? 그런 사례들도 좀 모아 보고, 그것이 아동의 복리에 만하는지 아닌지 사례화해서 그것을 토대로 이 법은 계속 논의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성가족부차관 이기순**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정경희** 그러면 지금 양쪽이 평행선을 달리는 데다가…… 현장에서 쉼터 입소와 관련된 보호자의 이의 제기 사례라든가 이런 것을 좀 수집해 보시고, 이 조항은 개정하지 않고 그냥 현행대로 가는 것이 더 낫다. 그러니까 이 조문에 관한 한 계속 심사하는 것으로 하시지요.

○**김미애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지요.

○**소위원장 정경희** 그러면 그렇게 하기로 하고요.

네 번째 조문, 청소년쉼터 퇴소 청소년 자립 지원 근거 마련에 관한 조문을 심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항과 관련해서 수석전문위원께서 주요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송주아** 68쪽입니다.

6건의 개정안은 청소년쉼터를 퇴소한 청소년을 위한 자립 지원 조치를 마련하려는 내용으로 다양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위낙 내용이 다양해서 71쪽 표에서 간단히 정리하였습니다.

개정안들은 모두 자립 지원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을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고요. 자립 지원전담기관을 설치하는 조항을 신설하거나 자립지원계획 관련된 조항을 신설하거나 자립지원 업무를 위탁하는 근거 조문을 신설하거나 실태조사 및 자산형성지원사업 조항을 신설하는 등 다양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공통적으로는 자립 지원에 관한 규정을 담고 있는데요, 지원 대상은 쉼터를 퇴소한 18세 이상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거나 아니면 18세 이후 쉼터를 퇴소한 청소년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는 의무규정으로 하거나 임의규정으로 하는 차이도 있고요. 그리고 주거·생활·교육·취업 지원 그리고 자립정착금·자립수당, 자산형성 지원, 자립 실태조사, 사후관리 및 기타 등 다양한 내용의 자립 지원 조치를 담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내용은 68쪽에서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원 대상 부분입니다.

지원 대상은 18세 이후 쉼터를 퇴소하는 청소년의 경우에만 지원 요건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으므로 지원 대상을 청소년쉼터를 퇴소한 청소년으로 규정하는 것이 보다 적절해 보입니다.

다음, 의무 사항으로 규정할 것인지 여부인데요.

자립 지원을 구체적으로 이행하기 위해서는 예산 사정 등 고려해야 할 점이 많습니다. 따라서 지원의무를 임의규정으로 하여 재량의 여지를 둘 필요도 있다고 보입니다.

다음, 자립수당·자립정착금 지원과 관련해서 현재 자립수당은 지원하고 있는데 자립정착금은 예산 지원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별도로 자립정착금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예산정책처 추산으로 연평균 21억 원 정도가 소요된다는 점을 감안해서 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 실태조사입니다.

실태조사 실시에 필요한 쉼터 퇴소 청소년의 소재 파악과 예산·인력 운용 등의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고, 현재 자립지원관 등을 통해 사례 관리를 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를 고려한 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 자립지원전담기관을 설치하는 별도 조문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현행법상 자립지원관과 기능이 유사하고 중복 우려가 크다는 점을 고려해서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다음, 자립지원계획 조문을 신설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소년쉼터는 종류별로 보호 기간과 핵심 기능에 차이가 있고 청소년의 입·퇴소가 반복되는 특성이 있습니다. 이를 고려할 때 모든 15세 이상 입소 청소년에 대해서 자립지원계획을 수립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은 쉼터의 기능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해서 신중한 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 자립지원업무 위탁 조문입니다.

현재도 여성가족부가 청소년 단체에 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문 신설에 대해서는 신중한 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 자산형성지원사업 조문입니다.

개정안과 기능과 성격이 유사한 다른 부처의 유사 사업이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의 아동발달지원계좌나 청년내일저축계좌 등. 이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청소년도 지원이 가능하고요. 그래서 개정의 실익이 적다는 점에서 신중한 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관계기관 의견으로 기획재정부가 신중 검토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현행법에서 이미 쉼터 퇴소 청소년의 자립지원에 대한 국가와 지자체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이 규정을 신설할 실익이 없고, 규정하더라도 임의규정으로 해야 한다는 입장을 제시하였습니다.

75쪽부터 조문대비표가 있는데요 저희가 수정 의견으로 자립지원 조치에 대해서만 반영하고 자립지원 조치의 내용은 쉼터를 퇴소한 청소년에게 그리고 임의규정으로 하면서 주거·생활·교육·취업 지원 그리고 자산형성지원, 사후관리를 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는 것으로 정리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정경희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부차관 이기순 수석전문위원과 많은 부분 일치하기 때문에 저희가 의견을 달리하는 것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지원 대상을 ‘청소년쉼터를 퇴소한 청소년’ 그렇게 정리를 해 주셔서, 18세 이후를 뺀 것은 좋은데 저희는 다만 청소년쉼터를 청소년복지시설로 바꾸자는 의견을 제안합니다. 왜냐

하면 현재 청소년자립지원관이라든가 회복지원시설 등 청소년복지시설, 자립에 대한 시설이 점점 늘어나고 있어서 쉼터만으로 제한하면 이런 조치 사항에서 혜택을 못 받는 청소년이 들어갈 수 있어서 의원님들은 이렇게 다 제안을 안 해 주셨지만 저희는 복지시설로 넓히는 것을 제안하고.

다른 부분들은 다 수석전문위원 의견과 동일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원의무를 임의규정으로 한 다거나 그 밖에는 다 동의하는데, 다만 자립수당·정착금 부분은 신중한 의견을 주셨는데 현재 정부에서 자립수당은 주고 있고요, 쉼터 청소년 같은 경우에 자립정착금을 못 주고 있는데 우리가 같은 대상으로 비교가 되는 게 복지부가 하는 보호종료아동입니다. 보호종료아동은 자립정착금을 주고 있어서 청소년도 주는 방향으로 저희는 계속 건의를 하고 있고, 실제 지자체에서 주는 경우가 세 군데가 있습니다. 부산·울산·세우는 지방비로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들어갔으면 하는 게 저희 의견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 차이 나는 부분만 말씀드렸고 나머지는 수석전문위원이 얘기한 것처럼 다 신중 검토의견입니다.

○소위원장 정경희 그러면 위원들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애 위원 저는 기본적으로 여가부 의견에 동의합니다.

그러면서 조금 질의해 보면, 청소년쉼터뿐만 아니라 더 넓혀서 청소년복지시설로 해야 된다고 하셨는데 타당한 의견이고.

그러면 뭐뭐가 들어갑니까, 청소년복지시설에는?

○여성가족부차관 이기순 일단은 청소년쉼터 들어가고요, 자립지원관이 들어가고요, 회복지원시설이 있습니다.

○김미애 위원 회복지원시설.

○여성가족부차관 이기순 소년원에서 나와 가지고……

○김미애 위원 소년법상 처분받은 아이들 쉼터.

○여성가족부차관 이기순 예, 1호 처분받아서 같이 있는 아이들입니다.

○김미애 위원 그래서 청소년복지시설로 하는 게 저는 더 맞다고 여겨지고.

그다음에 또 말씀하신 보호종료아동과의 비교를 해 보면 청소년복지시설을 퇴소한 아동도 똑같은 보호가 필요하다는 건데 실질적으로는 똑같은 처지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렇지요? 그래서

그런 거겠지요?

○여성가족부차관 이기순 그렇습니다.

○김미애 위원 보호종료아동이나 청소년복지시설에서 퇴소한 청소년이나 똑같은 상황이 거의 대부분이잖아요, 실질적으로 보호자가 제대로 보호·양육하지 않는 경우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을 이렇게 하면 악용될 소지는 없을까요?

○여성가족부차관 이기순 예? 어떤 식의 악용을……

○김미애 위원 입소할 때부터, 아니면 단기간 입소하고 나서 퇴소한 경우에도 지원한다든지 한다면……

○여성가족부차관 이기순 현재 저희가 수당을 줄 때도 그냥 다 주지 않고 쉼터나 자립지원관을 2년 이상 이용해야 된다가나 하는 조건을 달고 주고 있습니다. 그냥 잠깐 들어와 가지고 3개월 있다 간 애들을 주거나 이렇게는 안 할 겁니다.

○김미애 위원 2년 이상.

그래서 저는 여가부 의견이 타당하다고 보여집니다.

○소위원장 정경희 우리가 국회에서 법안 심사를 할 때는 축조심의가 원칙이기 때문에, 여러 의원님들께서 내신 방대한 법안이기에 때문에, 청소년쉼터 퇴소 청소년의 자립 지원 근거 마련에 관한 법은 69쪽에 보면 항목별로 다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씩 다, 별 이의는 없으시지만 하나씩 짚고 넘어가야 되고. 특히 2개의 항목에서는 여가부와 여가위의 의견이 약간씩 다르기 때문에 논의를, 하나씩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지원 대상은 청소년쉼터를 퇴소한 청소년으로 할 것이냐, 아니면 복지시설을 퇴소한 청소년으로 할 것이냐 하는 문제에서 여가부는 복지시설을 퇴소한 청소년으로 하자고 하셨는데 이렇게 자립 지원의 혜택을 받는 청소년이 많아지는 것은 좋습니다만 행정적·재정적으로 감당할 능력이 현실적으로 뒷받침이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 법을 먼저 제정해 놓고 우리가 법을 이행할 동력이 없으면 그것도 문제기 때문에 여가부에서는 어떻게……

○여성가족부차관 이기순 아마 입법조사처에서 추계를 하신 것 같은데 108억 정도, 연평균 21억을 얘기하셨는데 저희 같은 경우 아까 말씀한 대로 시설을 이용한 아이들의 조건을 2년 이상 이용한 아이들이 나왔을 경우로 하면 연평균 한

100명 정도 됩니다. 100여 명으로 하면 1000만원 준다고 했을 때 한 10억 원 소요가 됩니다. 이 정도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소위원장 정경희 그러면 이 대상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큰 예산이 드는 게 아니니까……

○김미애 위원 맞아요. 여가부 의견이 맞는 게 대표적인 게 뭐냐면 청소년회복지원시설, 여기는 사실 지원도 상당히 부족하고 수년 내에 조금 상향되어서 대부분이 그 시설을 운영하시는 분들이 알아서 조달해 왔었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있는 아이들도 사실은 보호자의 손을 다 떠난 아이들이기 때문에 사정은 다를 게 없습니다. 그래서 여가부 의견대로 하는 게 입법 취지를 살리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소위원장 정경희 수석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석전문위원 송주아 이 부분은 정책적으로 위원님들께서 결정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정경희 그러면 이 부분은 청소년쉼터라기보다는 여가부의 안대로 청소년복지시설을 퇴소한 청소년으로 하든가 그런 식으로 하겠습니까.

그다음에 의무 사항 여기에 대해서는 임의규정으로 한다는 데 이의가 없으시니까 이 부분은 임의규정으로 하는 것으로 하지요.

그다음에 자립수당하고 자립정착금 지급하는 이 문제는 추가 재정 소요 문제가 있으니까, 그리고 여가위와 여가부가 약간 의논이 갈리는 면이 있는데…… 자립정착금을 지원하는 것도 재정적으로 확보가 됩니까?

○여성가족부차관 이기순 예.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조금 더 타이트하게 추계를 해 보니까 매년 한 10억 정도 소요가 되고 지방자치단체 세 군데는 이미 하고 있어요. 부산·울산·제주도 지방비로 주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정책적으로 하겠다고 하면 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소위원장 정경희 그러면 이것도 자립정착금 지급을 채택하는 방향으로 합시다.

그다음에 실태조사 실시 이것은 다 의견의 일치를 봤지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어서 이 조문에 대해서는 우리가 채택하지 않기로 하고요.

그다음에 자립지원전담기관 설치·운영에 관한 것은 청소년자립지원관이 이미 있어서 유사·중복 우려가 크다는 것이지요?

○여성가족부차관 이기순 예.

○김미애 위원 지금 있는 청소년자립지원관이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필요한 게 있으면 그것을 지원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여성가족부차관 이기순 그런데 여기 별도 조항은 필요 없습니다.

○소위원장 정경희 그러니까 청소년자립지원관 조사를 해 보니까 이미 전국에 11개의 청소년자립지원관이 있다 그래요. 그리고 올해 하반기에 2개소가 또 추가로 개관된다고 하니까 기존의 청소년자립지원관을 통해서 지원하는 것이 오히려 더 현실적으로 나은 방안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자립지원계획 수립 이것도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데 대해서 모든 위원님이 의견의 일치를 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입·퇴소가 반복된다는 게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입소하고 퇴소하는 청소년들이 많은 것이지요?

○여성가족부차관 이기순 예.

○소위원장 정경희 그래서 기관의 특성상, 쉼터의 특성상 자립지원계획을 수립하는 것을 의무화할 필요까지는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자립지원업무 위탁도 이미 근거 규정이 있다라는 것이지요? 한국청소년복지상담원이라는 데서 자립지원업무를 제대로 하고 있습니까? 현재 어디에서 주로 하고 있지요, 자립지원업무를?

○여성가족부차관 이기순 자립지원업무를 위탁하는 것, 청소년 단체에 위탁하는 것을 위해서 여기다 쓰셨는데 청소년 자립지원업무를 총괄하는 곳은 여성가족부 산하 공공기관인 한국청소년상담복지 이 법인에서 실제 하고 있어서 별도의 조항은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정경희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에서 이미 유사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니까, 이 구절도 별도로 개정할 필요는 없다라는 겁니다.

그다음에 자산형성지원사업 이것도 이미 보건복지부에서 요건을 충족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개정의 실익이 적다라는 것이지요.

그러면 기획재정부의 신중 검토가 있지만 예산이 어느 정도 확보될 수 있다고 하고 소요 예산이 생각만큼 크지 않기 때문에 이 구절에 관해서는 두 가지, 지원 대상하고 자립수당·정착금 지급하는 것을 여성가족부의 수정안대로, 의견대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94쪽, 청소년복지시설 종사자의 신변보호를 위한 안전대책 마련에 관한 조문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석전문위원께서 주요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송주아 94쪽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수진 의원안 34조입니다.

이수진 의원안은 청소년복지시설 종사자를 신체적·정신적으로 위협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종사자의 신변보호를 위한 안전대책을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종사자의 안전과 시설의 안정적 운영을 도모하려는 취지로 제안되었습니다. 그런데 개정안 34조의 3항에 시설 종사자를 신체적·정신적으로 위협하는 행위를 금지하도록 하는 것에 대해서는 현재도 형법을 통해서 달성이 가능하고 구체적인 내용은 개정안 4항을 통해서 달성이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4항이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청소년복지시설 종사자의 신변보호를 위한 안전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라고 돼 있어서 안전대책 마련을 통해 3항의 의견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다고 보입니다. 따라서 3항은 삭제하고 개정안 4항을 3항으로 하며 주체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 수정하는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95쪽의 수정의견입니다.

그리고 간단한 내용이라 96쪽의 부칙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칙은 시행일에 관한 내용입니다.

시행일은 하위법령 정비에 필요한 통상적인 유예기간을 두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아서 여성가족부 의견과 맞추어서 공포 후 6개월로 정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정경희 정부 측 의견.

○여성가족부차관 이기순 수석전문위원 의견과 동일한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정경희 동의하십니까?

○여성가족부차관 이기순 예.

○소위원장 정경희 그러면 위원님들 말씀해 주십시오.

○김미애 위원 ‘3항을 굳이 규정할 실익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다른 법에 봐도 유사한 규정이 있긴 하네요?

○수석전문위원 송주아 조금 다릅니다.

○김미애 위원 조금 달라요?

○수석전문위원 송주아 예.

○김미애 위원 그런데 저는 종사자들을 위해서 선언적인 의미라도 이렇게 규정을 하고자 하는 게, 보니까 개정의 취지는 같아요. 그런데 선언적인 의미로만 규정하면 별로 실익이 없고 어차피 이 규정을 넣는다면, 벌칙 규정이 따라오지 않으면 사실 큰 실익은 없어 보여요. 그런데 또 현장에서는 이런 게 있으면 조심하는 의미는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려고 하나 하는 생각은 해 보는데 결국은 이걸 안 해도 기타 형사법으로 규율할 수 있기 때문에 규정의 실익은 없다. 그렇지요?

그래서 저도 여가부나 수석의 수정안에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정경희 위원님 말씀까지 들었는데요. 두 가지 사항이었는데, 청소년복지시설의 종사자에 관한 건데 현재 형법을 통해서 달성 가능하기 때문에 개정 실익이 없다라는 내용입니다.

○김미애 위원 형법뿐만 아니라 다른 법률로 규율하면 될 것 같아.

○소위원장 정경희 예, 기존의 법률로 규율한다라는 얘기이고요.

그다음에 신변보호를 위한 안전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라는 데 그 주체가 누가 돼야 되느냐를 원래 개정안은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으로 되어 있으나 이것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 바꾸는 것이 법리적으로 타당하다고 보신 것이지요? 그래서 지금 여성가족부 그다음에 여성가족위 위원님들의 이의도 없고 다 동의하셨기 때문에 수정의견을 받아들여서 3항을 신설하고 현재의 3항을 4항으로 하는 식으로 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96쪽 개정안 부칙의 시행일을 언제로 하느냐, 공포 후 6개월로 하는 것이 적절하다라는 데 이의 없으십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4항부터 14항까지 논의를 해서 의결할 순서인데 현재 의결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의결정족수를 채우면 진행을 하도록 하고요.

일단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4분 회의중지)

(11시42분 계속개의)

○소위원장 정경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 심사한 제4항부터 제14항까지 11건의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중 제5항, 제6항, 제7항, 제9항, 제10항, 제11항, 제12항, 제13항, 제14항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이를 통합 조정하여 위원회의 대안을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나머지 법안들은 소위원회에서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안건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의결한 법률안에 대한 문안 작성 및 자구정리는 소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도 있는 법안 심사를 위하여 힘써 주신 위원님들께 소위원장으로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성가족부차관, 관계기관 직원 여러분, 보좌직원, 수석전문위원을 비롯한 위원회 직원과 속기사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3분 산회)

○출석 위원(6인)

김 미 애	김 한 규	양이원영	용 혜 인
정 경 희	조 은 희		

○청가 위원(2인)

유 정 주	장 경 태
-------	-------

○출석 전문위원 및 입법심의관

수 석 전 문 위 원	송 주 아
입 법 심 의 관	이 은 정

○정부측 및 기타 참석자

여성가족부			
차 관	이 기 순		
기획조정실장	황 윤 정		
청소년정책관	김 권 영		